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수신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

(경유)

제목 [안내]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관련 답변

1. 관련

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2618(2019.4.30.)

2.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를 시간단위로 운용 가능한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근무지외 연수 규정의 취지는 교원이 휴업일(방학 등)에 교과지도 및 교재연구 등 자기연찬을 독려하고자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 근무지외 연수의 승인(결재)권자는 학교장이므로 연수의 질 관리 등의 책무성을 가지게 되며, 휴업일지라도 학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근무지외 연수의 취지는 방학 등에 다음 학기의 수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므로 단축 근무, 조기 퇴근 등의 용도로 운용될 수 없으며, 방학 중 근무일에 학교에 출근한 경우 근무지외 연수를 근거로 조퇴·반일연가 등 복무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없이 단축근무를 하는 것은 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운용하는 것입니다.(위의 내용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2618(2019.4.30.)호 인용)

라. 방학 중 방과후교육활동(내부강사), 영어캠프, 기초학력 지도 등의 교육활동 운영을 위해 출근 후, 교육활동 이후 시간에 대한 근무지외 연수(시간단위 사용 여부 포함)의 승인 여부는 소속 학교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장학사

주경희

유초등인사담당

김정수

교원인사과장

전결 2022. 07. 08.

우태제

협조자

시행 교원인사과-11440

(2022. 07. 08.)

접수 M00004721680

(2022. 7. 8.)

우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보람동)

/ <http://www.sje.go.kr>

전화번호 044-320-2312

팩스번호 044-320-2399

/ chamsolbong@korea.kr

/ 비공개(5)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